

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(안)

의안 번호	108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2.

제 출 자 : 성동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 및 권리 옹호 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,
-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기여를 위해 설치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민간 위탁체를 선정·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합니다.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- 장소: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44 (성수동2가)

센터명	위 치	규모(m ²)		정원 (명)	개원 (예정)
		층수	면적 (연면적)		
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	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44(성수동2가)	4층	534m ²	30명	'17.3.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
- 발달장애인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
- 지역 특성화프로그램 운영
- 교류프로그램 운영,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(시설운영) 등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
-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
-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
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은 특수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운영해야 함에 따라 구 직영 시 발달장애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관리업무의 증가로 행정의 비효율이 우려되므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인력의 효율적인 배치가 가능하여 사무 간소화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이 기대 됨.
-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민간 위탁 시 대상자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함으로써 평생교육센터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아울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가 기대 됨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
- 「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
- 「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

나. 위탁운영비: 500,000천원 (시비 90%, 구비 10%)

[참고법령]

□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구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·시설관리 사무 등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,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자치사무는 성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성동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.

□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6조(평생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「교육기본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별로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,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,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8조(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)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,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,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17. 2. 28.

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7. 2. 14. / 성동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17. 2. 17.

다. 상정일자: 2017. 2. 24.(제230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)

2. 제안이유

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 및 권리 옹호 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,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기여를 위해 설치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민간 위탁체를 선정·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- 장소: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44 (성수동2가)

센터명	위 치	규모 (m ²)		정원 (명)	개원 (예정)
		층수	면적 (연면적)		
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	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44(성수동2가)	4층	534m ²	30명	'17.3.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
- 발달장애인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

- 지역 특성화프로그램 운영
- 교류프로그램 운영,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(시설운영) 등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
-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
-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3항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은 특수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운영해야 함에 따라 구 직영 시 발달장애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관리업무의 증가로 행정의 비효율이 우려되므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에 가능하여 사무 간소화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이 기대됨.

-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민간 위탁 시 대상자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함으로써 평생교육센터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아울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가 기대 됨.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
- 「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
- 「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

나. 위탁운영비: 500,000천 원(시비 90%, 구비 10%)

【위치도 및 건물 사진】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4px; font-weight: bold;">위치도</p>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4px; font-weight: bold;">건물사진</p>	

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, 2017년 3월 개관 예정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향후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으로,

-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그 운영의 성격 상 특수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대상자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 개발·운영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 및 권리 보장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- 다만, 민간 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, 사업능력, 재정능력,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, 매년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운영 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보조금 정산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회의록 참조.

7. 토론요지: 없음.

8. 심사결과: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.